



제432회국회(임시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한국교통안전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중소기업 대상 시설사용료 분할납부 근거 마련 >
■ 정부 제출(의안번호 제2215565호)

2026. 2.

국 토 교 통 위 원 회
전 문 위 원 오 세 일

목 차

□ 정부 제출(제2215565호)	1
Ⅰ. 제안경위	1
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Ⅲ. 검토의견	3
1. 중소기업 대상 시설사용료 분할납부 근거 마련(안 제16조의4 후단 신설)	3
※ 참고자료	6

□ 정부 제출(2215565)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정부 제출
2. 제 안 일 : 2025. 12. 24.
3. 회 부 일 : 2025. 12. 26.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물가인상 및 경기침체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교통안전공단이 관리하는 시설의 사용료 또는 이용료의 징수 대상자가 중소기업자인 경우에는 해당 사용료 또는 이용료의 분할 납부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Ⅲ. 검토의견

1. 중소기업 대상 시설사용료 분할납부 근거 마련(안 제16조의4 후단 신설)

가. 검토의견

개정안은 한국교통안전공단(이하 “공단”)이 시설 사용료 등을 징수하는 경우 대상자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¹⁾에 따른 중소기업자인 경우에는 사용료 등을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4 후단 신설).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 ①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이하 “중소기업시책”이라 한다)의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또는 조합 등(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자로 한다.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또는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소속회사로 편입·통지된 것으로 보는 회사는 제외한다.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

가. 업종별로 매출액 또는 자산총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나. 지분 소유나 출자 관계 등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2.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적기업

3.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이종(異種)협동조합연합회(이 법 제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중소기업을 회원으로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4.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 연합회, 전국연합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5.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② 중소기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분기준에 따라 소기업(小企業)과 중기업(中企業)으로 구분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5년간은 중소기업으로 본다. 다만, 중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중소기업시책별 특성에 따라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단체 등을 중소기업자로 할 수 있다.

현행	개정안
제16조의4(사용료 등의 징수) 공단은 공단이 관리하는 시설을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자로부터 사용료 또는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후단 신설>	제16조의4(사용료 등의 징수) ----- ----- ----- -----, 이 경우 공단은 징수 대상자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인 경우에는 사용료 또는 이용료를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단은 현행법 제16조의4에 따라 공단이 관리하는 자동차 관련 연구 시설인 자동차 주행시험장과 K-City(자유주행 실험도시) 시설에 대해 이용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하고 있으며, 이용자는 주로 자동차 제작사, 타이어 제조사, 자율주행 기술개발 기업, 자동차 관련 대학 및 연구기관 등임.(참고1. 참조)

2024년 기준 공단의 시설사용료 징수액은 총 47억 6,800만원(687건)으로, 이 중 37.4%에 해당하는 17억 8,600만원(249건)을 중소기업으로부터 징수 하였고 중소기업의 1건당 징수액은 평균 717만원 수준²⁾임.

2)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중소기업으로부터 징수한 1건당 시설사용료는 최하 21만원, 최고 7,247만 6,000원임.

【 한국교통안전공단 시설사용료 징수 현황(2024) 】

구 분	이용자별 시설사용료 징수액				
	계	대기업·중견기업	중소기업	대학	연구기관
자동차 주행시험장	4,710백만원 (668건)	2,866백만원 (392건)	1,774백만원 (240건)	57백만원 (21건)	13백만원 (15건)
K-City	58 (19건)	23백만원 (2건)	12백만원 (9건)	-	23백만원 (8건)
계	4,768백만원 (687건)	2,889백만원 (394건)	1,786백만원 (249건)	57백만원 (21건)	36백만원 (23건)
(총징수액 대비)	100.0%	60.6%	37.4%	1.2%	0.8%

자료 : 한국교통안전공단

개정안과 같이 중소기업에 대해 공단의 시설사용료를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 자동차 관련 핵심 연구시설을 이용하기 위한 금전적 부담이나 자금 운용상의 부담 등 중소기업의 경제적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임.

다만, 공단은 현재 중소기업 및 대학·연구기관 등에 대해 시설사용료 무상 또는 경감 혜택을 부여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³⁾, 분할 납부 혜택의 적용 대상에 중소기업 외에 공익적 성격을 가지는 대학·연구기관 등을 포함하는 방안도 논의가 필요해 보임.(참고2. 참조)

3) K-City 시설사용료 부과 기준

구분		평일 주간(09:00~18:00)		평일야간, 주말, 공휴일	
		공동사용 (시간당)	단독사용 (시간당)	공동사용 (시간당)	단독사용 (시간당)
대학 및 중소기업(자율차 개발 관련)		무상	100천원	100천원	100천원
자율주행 데이터공유 협업체	대기업·중견기관, 연구기관	무상	1,011천원	337천원	1,011천원
	연구기관(연구원)	무상			
		대학·중소기업	무상	100천원	100천원
대기업, 중견, 연기기관		337천원	1,011천원	337천원	1,011천원
영리 기관, 비영리 공인법인					
그 외					

나. 국토교통부 의견

징수대상자인 ‘중소기업’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하여 사용료 또는 이용료를 분할 납부할 수 있는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고 봄.

문 의 처
02)6788-5584

□ 자동차 주행시험장

- (개요) 주행시험장은 국내·외 법규시험(자동차 안전기준, UNECE 규정 등)과 첨단운전자지원시스템, 자율주행 연구·성능평가를 위한 핵심연구 인프라
- 총 11개의 시험로 및 4개의 시험장이 고속주행, 저마찰 조건, 특수내구 환경 등 다양한 조건을 묘사하고, 추가적인 시험장비로 평가·연구 중

주행시험장 개요

- 총면적 : 217만㎡(65만평), 공단소유 178만㎡(54만평), 국유지 36만㎡(11만평)
- 주행시험장 : 고속주회로 등 14개 시험로(총연장 28.5km)



- ① ADAS평가장 : 길이 660m, 폭 150m, 가혹한 조종안전성 평가하는 시험로
- ② 고속 주회로 : 길이 5,040m, 폭 최대 19.5m, 250km/h까지 핸들조작 없이 주행 가능한 시험로
- ③ 종합 시험로 : 길이 900m, 폭 64m, 다양한 제동안전성, 조정안전성 등 일반적인 성능평가 시험로
- ④ 선회 시험로 : 지름 100m, 각종 선회시험 및 선회 시안정성, 조향 특성 등 평가하는 시험로
- ⑤ 저마찰로 : 길이 700m, 빙판, 눈길, 빗길을 재현하는 마찰계수가 0.3, 0.4, 0.7~0.8의 시험로
- ⑥ 광폭저마찰로 : 길이 300m, 폭 20m, 모든 차종을 시속 160km/h 이상 고속시험이 가능한 저마찰로
- ⑦ 조향 성능로 : 총연장 4,067m, 폭 최대 15m, 자동차 조향장치, 현가장치 등 성능 시험로
- ⑧ 직선로/소음시험장 : 길이 1,800m, 양 끝단이 원선회 구간으로 주행소음 측정가능한 시험로

□ K-City(자율주행 실험도시)

- (개요) 도심, 커뮤니티, 자동차전용도로, 고속주회로, 교외부 등을 중심으로 다양한 교통상황을 재현함으로써 자율주행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시설

K-City(자율주행 실험도시) 개요



- ① 자율주차시설 : 평면/직각/사선주차/실내주차 등 환경별 자율주차 가능한 시험 시설 제공
- ② 도심부 : 실제 도심부 내 도로상황을 재현하여 자율주행, 주변시설물 인지, 돌발대응 등 실험환경 제공
- ③ 자동차전용도로 : 고속이동이 가능한 도로환경 제공
- ④ 고속 주회로 : C-V2X환경과 고속주행 자율주행차 평가환경 제공
- ⑤ 교외도로 : 인프라시설이 부족한 지방도 교통환경 재현한 시험 시설 제공

자료 : 국토교통부

참고2

한국교통안전공단 시설물 사용료 납부 현황

□ 공단 시설사용료 납부 대상 시설물

- (시설현황) 자동차 주행시험장, K-City(자율주행 실험도시)
- (납부대상) 자동차 제작자, 타이어 제조사, 자율주행 기술개발 기업, 관련 대학교(원) 및 연구기관

□ 공단 시설사용료 기준 및 납부현황

- (사용료) 자동차안전연구원 업무지침 별표 1에 따라 사용료 산정
 - 주행시험장 시설사용료 기준: 주행시험장 이용구간별로 공동·단독사용에 따라 요금 차등

(부가세 별도, 단위 : 원)

구분	공동사용(1대당)		단독사용 (시간당)	비고
	최초4시간	1시간 추가		
고속주회로	696,000	174,000	620,000	각각의 시험로에 적용
직선로				
종합시험장, 선회시험장, 경사로, 비포장시험로				
저마찰로	960,000	240,000	480,000	
원형저마찰로				
전파장해시험장	168,000	42,000	42,000	장비사용료 별도
광폭저마찰로	1,204,000	301,000	903,000	
조향성능로	848,000	212,000	636,000	
특수내구로	792,000	198,000	594,000	

- K-City 시설사용료 기준

구분		평일 주간(09:00~18:00)		평일야간, 주말, 공휴일	
		공동사용 (시간당)	단독사용 (시간당)	공동사용 (시간당)	단독사용 (시간당)
대학 및 중소기업(자율차 개발 관련)		무상*	100천원	100천원	100천원
자율주행 데이터공유 협업체	대기업·중견기관, 연구기관	무상*	1,011천원	337천원	1,011천원
	연구기관(연구원)	무상*			
		대학 중소기업	무상*	100천원	100천원
대기업, 중견, 연기기관		337천원	1,011천원	337천원	1,011천원
영리 기관, 비영리 공인법인					
그 외					

* 무상 개방은 2027년까지(잠정) 지원

- (사용료 통계) '24년 중소기업 관련 사용료는 총 1,786백만원(249건)
 - 주행시험장 사용료 4,710백만원(668건) 중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사용료는 1,774백만원(240건)으로 37.5% 차지
 - K-City 사용료 58백만원(19건) 중 중소기업 사용료는 12백만원(9건)
- * 건수는 세금계산서 발행 건수 기준임

자료 : 국토교통부